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69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이연희·이정문·복기왕

박상혁 • 정성호 • 한민수

김남희 · 서미화 · 김동아

이춘석 · 허종식 · 허성무

이병진 • 이광희 • 박홍배

임미애 · 문진석 · 한준호

정준호 • 박용갑 • 윤종군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규검사·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검사이나 기준일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검기한을 초 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림문 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나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안내가 이루어져 한계가 있어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 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자격유지검사에 대한 사전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의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통지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운수종사자 현황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현황정보 미등록 운수 종사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3(자격유지검사에 대한
	사전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토교통부령의 자격유지검
	사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에게 자
	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통지
	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
	록되어있는 운수종사자 현황정
	보를 기준으로 하며, 현황정보
	미등록 운수종사자에게는 통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